

수강료 감면기준

대 상	감면율
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	50%
장애인	50%
65세 이상 어르신	30%
국가유공자	50%
한부모가족	50%
다자녀가족 (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에 한함) ※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	2명 이상 50%

※ 감면 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,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.